

#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신규제정 2000.07.10 대통령령 제16900호

일부개정 2006.08.29 대통령령 제19663호

[시행 2013. 3.23] 타법개정 2013.03.23 대통령령 제24425호

[시행 2014.11.19] 타법개정 2014.11.19 대통령령 제25751호

행정자치부(재정정책과) 02-2100-4130

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[전문개정 2012.9.21]

**제2조(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)**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(이하 "지방연구원"이라 한다)은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인구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) 100만 이상의 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별로 설립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.

③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)

1. 설립발기인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) 1부

2. 정관 1부

3. 재산목록(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)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(出捐)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
4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

5.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

6. 창립총회 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

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)

1.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

2.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(財源)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

3.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

[전문개정 2012.9.21.]

**제3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** ①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·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④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·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2.9.21]

**제4조(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)** ①법 제17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”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.

②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)

[전문개정 2012.9.21]

**제5조(결산서 등 제출기한)**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”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2.9.21]

**제6조(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·감독 등)** ①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·감독,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)

[전문개정 2012.9.21]

**제7조(자료의 제공)** ①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12.9.21]

**제8조(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)** ①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(이하 “경영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인회계사(회계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회계감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②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경영평가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한 경영평가표준안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. 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)

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표준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)

[전문개정 2012.9.21.]

**제9조(지방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)**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평가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, 2014.11.19)

②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9.21.]

**제10조(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)** ①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(이하 "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경영평가 기준의 설정
2. 경영평가 대상의 선정
3.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

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

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원의 경영과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2.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
3. 4급 이상의 시·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

④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9.21.]

**제11조(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)**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.

1. 경영평가 결과의 인사·예산 및 보수체계에의 연계·반영
2. 사업규모·조직·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
3.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12.9.21.]

## 부 칙<제25751호, 2014.11.19> 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**

**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** ①부터 <230>까지 생략

<231>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2항,

제6조제2항, 제8조제3항·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각각 “행정자치부”로 한다.  
<232>부터 <418>까지 생략

별표 / 서식

[서식 1] 법인설립허가신청서

[서식 2] 법인설립허가증

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4.11.19>

## 법인설립허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성명(한글) (한자)	생년월일	
	주소  (전화번호: )		
법인	명칭		
	소재지	(전화번호: )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 )	

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행정자치부장관 귀하**

첨부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설립발기인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) 1부</li> <li>2. 정관 1부</li> <li>3. 재산목록(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)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</li> <li>4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을 작성한 서류 1부</li> <li>5.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</li> <li>6. 창립총회 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-	-----------

###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접수	검토	결재	허가증 작성	허가증 발급
신청인	처리기관 (행정자치부)	처리기관 (행정자치부)	처리기관 (행정자치부)	처리기관 (행정자치부)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4.11.19>

제 호

## 법인설립허가증

1. 법인 명칭:
2. 소재지:
3. 대표자
  - 성명:
  - 생년월일:
  - 주소:
4. 사업 내용

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 
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자치부장관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㎡]